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5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어선의 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서천호 의원안)	2

I. 개요

1.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45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1.

(3) 회 부 일 : 2024. 11.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 수리 산업의 경우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Ⅱ. 검토의견

1. 어선의 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서천호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 제1항) ☐ 영세율 적용대상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제5호)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제6호) - <신 설> ☐ 적용기한 - 제5호 및 제6호: 2025년 12월 31일 - <신 설>	☐ 영세율 적용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영세율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어선의 수리 용역(제7호)</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u>제7호: 2028년 12월 31일</u>

* 서천호의원안 2024. 11. 11. 발의(의안번호 5455)

☐ 개정안은 어선의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¹⁾, 그 외에 조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용역이 있음.

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방산물자, 군납용 석유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 장애인용보장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영세율 제도는 부가가치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단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됨(이론상 '완전면세').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되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는 이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음(이론상 '부분면세').

- 개정안은 어선의 수리 용역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어선의 수리에 대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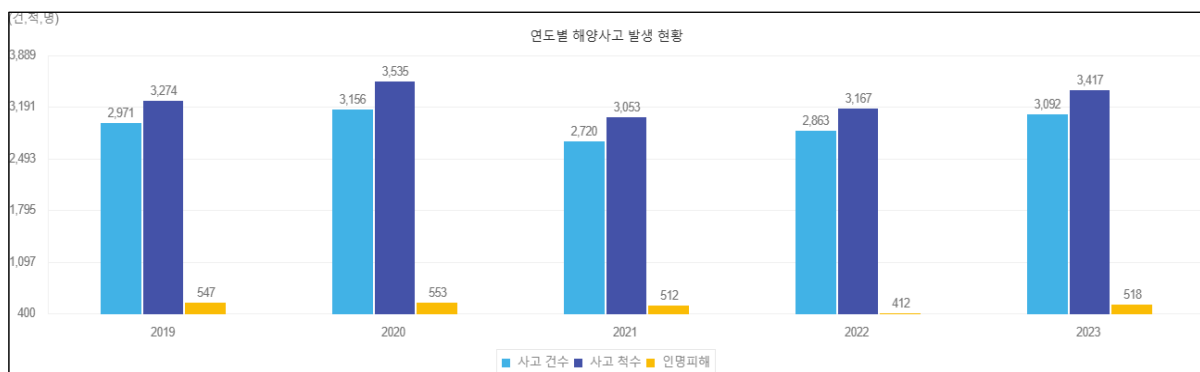
수협중앙회의 '2024년도 어업경영조사보고'에 따르면 근해어업평균

출어비²⁾(4억 2,964만원) 중 수리비는 9.5%(4,066만원)를 차지하고, 조선소 신조(新造)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으로 어선 신조가 어려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노후화된 중고선 도입에 따른 어선 수리가 불가피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어선의 수리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통해 어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일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둘째, 노후화된 중고선에 대한 점검과 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해상사고의 원인³⁾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적시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해상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자료: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통계

2) 근해어업에서 선박이 출항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며, 어구비, 연료비, 소모품비, 후생비, 수리비 등을 말함.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보도자료(2024.1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최근 5년('19~'23년)간 전체 화재·폭발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폭발 사고 785척 중 겨울철에 발생한 사고는 159척(20.3%)으로 파악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에 따르면, 사고 주요 원인은 선내 전기설비의 정비·점검·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에는 강한 풍랑, 폭설, 한파 등의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해 선박 화재·폭발 사고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 사고는 선박 연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40.3%, 64척) 또는 10톤 미만 소형의 선박(38.4%, 61척)에서 주로 발생했다.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나라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과 같이 소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방산물자,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영세율 적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영세율(제105조제1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105조의2)이 적용 중에 있고,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제106조의2제1항제1호)되는 등 어업 분야에 폭넓은 면세 혜택이 적용 중에 있다는 것임.

셋째, 기자재를 수리하기 위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어업용뿐만 아니라 농·축산·임업용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 사례가 없어 개정안과 같이 어선 수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할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와 유사 분야에 대한 적용 확대 요구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넷째,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2004년부터 시행중인 ‘어선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어업인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⁴⁾.

연근해어선의 보험 가입에 대하여 국비(보조율: 10톤 미만 70%, 10~20톤 미만 60%)와 지방비(지자체별, 톤수별 보조율 상이)가 지원되어 어업인의 보험가입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어선보험 가입현황]

(단위: 척, 백만원)

구 분	대상 (A)	가입 (B)	가입률 (B/A)	예산 실적행 (국비 기준)
2020년	60,096	21,115	35.14%	55,969
2021년	60,873	21,094	34.65%	60,138
2022년	60,873	22,240	36.54%	68,011
2023년	58,139	23,037	39.62%	73,482
2024년	57,935	24,015	41.45%	77,824

자료: 수협중앙회

□ 한편,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지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할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국 과세 원칙 실현 등을 위하여 수출 재화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어민들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어업용기자재 영세율·사후환급, 면세유 등 폭넓은 세제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어선의 수리 용역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7